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정 관

사회복지법인 혜 명 복 지 원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이라 칭한다.(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열거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열거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의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5.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
6. 식품기부법 제4조에 의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설치.운영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열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열거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그 밖의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 제1의" 기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6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의 취득.양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후원회원의 후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설의 장이 각기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11인 (이사장1인, 상임이사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과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이사 8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청담문도에서 추천하고, 3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외부추천이사로 하며, 혜명복지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 중 8인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임기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 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 ① 이사장은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주지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3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 임원의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유고 및 궐의 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②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이사장의 유고 및 궐위가 생긴 때부터 2개월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이 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2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사항
5. 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
6. 법인의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 지원하는 시설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9. 후원회비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소집 및 특례)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20조 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청을 요청한 때

⑥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하여 한다.

③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 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사무국에 비치해야 한다.

제 5 장 후 원 회

제30조 (후원회)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③ 후원회원의 후원금은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법인사무국 및 운영

제31조 (법인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법인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③ 법인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제를 둘 수 있다.

④ 법인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3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35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과 불교신문에 실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7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재산 및 임원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표1, 임원은 별표2,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1958. 9. 1. 보건사회부장관)

-- 법 인 설 립 허 가

이 정관은 195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20. 서울특별시장 승인)

-- 제 1장 4조 3항 4항 5항 신설(사업종류)

이 정관은 2005.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7 서울특별시장 승인)

-- 제1장 4조 7항 신설 (사업종류)

이 정관은 2006. 12.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9. 금천구청장 승인)

-- 제16조 임원취임 승인(별표2 임원명단 변경)

이 정관은 2010. 1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1. 금천구청장 승인)

-- 제16조 임원취임 승인(별표2 임원명단 변경)

이 정관은 2012.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7. 금천구청장 승인)

-- (별표2 임원명단 변경)

-- 제1장 제1조 변경

-- 제2장 제7조 변경 (경비와 유지방법)

-- 제2장 제11조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

-- 제2장 제12조 변경 (사업실적 및 결산)

-- 제3장 제15조 1목 변경 (임원의 종류와정수)

-- 제3장 제15조 2목,3목 삭제

-- 제3장 16조 변경 (임원의선임)

-- 제3장 16조 4항 신설 (임원해임)

-- 제3장 제17조 1항 변경 (임원선임의 제한)

-- 제3장 17조 2항,3항 신설 (임원 선임의방법)

-- 제3장 19조 제목변경

- (이사장 및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임원의 직무)
- 제3장 제19조 1항 변경 (이사장의 직무)
- 제3장 제19조 2항 변경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제3장 제19조 3항 신설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직무)
- 제3장 제19조 4항 변경 (이사의 직무)
- 제3장 제19조 5목 변경 (감사의 직무)
- 제3장 제22조 1항 변경 (이사 겸직금지)
- 제3장 제22조 2항 변경 (감사 겸직금지)
- 제4장 제23조 1항 변경 (이사회구성)
- 제4장 제24조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변경 (의결사항)
- 제4장 제25조 2항, 3항, 4항 변경
(이사회소집 및 특례)
- 제4장 제25조 5항 6항 신설(이사회소집 및 특례)
- 제4장 제26조 2항 변경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종족수)
- 제4장 제28조 2항 변경 (이사회 회의록)
- 제5항 후원회 신설
- 제6장 변경 (수익사업, 종전 제5장은 제6장으로)
- 제6장 제30조 1항 변경 (수익사업의종류 종전
제5장의29조는 제6장 제30조로)
- 제6장 제30조 1목 2목 삭제 (수익사업의종류)
- 제6장 제31조 변경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종전
제30조를 제31조로)
- 제7장 변경 (법인사무국 및 운영, 종전 제6장을
제7장으로 이동)
- 제7장 제32조 2항 변경 (법인사무국)
- 제7장 제32조 3항 4항 신설 (법인직제 및 임면)
- 제8장 변경 (정관변경 및 해산, 종전 제7장을
제8장으로 이동)
- 제8장 제33조 변경 (정관변경)
- 제8장 제35조 변경 (잔여재산의 귀속)

-- 제9장 변경 (공고방법 종전 제8장을 제9장으로 이동)

-- 제9장 제36조 변경 (공고의 방법)

이 정관은 2012. 11.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4. 23. 금천구청장 승인)

-- 제16조 임원취임 승인(별표2 임원명단 변경)

이 정관은 2013. 04.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07. 금천구청장 승인)

-- (별표2 임원명단 변경)

-- 제2장 제8조 1항 변경 (회계의 구분등)

-- 제3장 제16조 1항 3항 변경 (임원의선임)

-- 제3장 제17조 1항 3항 변경 (임원선임의 제한)

-- 제3장 제19조 2항 3항 변경

(이사장 및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임원의직무)

-- 제3장 제21조 변경 (임원의대우)

-- 제3장 제22조 변경 (임원의 겸직금지)

-- 제4장 제24조 4항 변경 (의결사항)

-- 제4장 제28조 1항 변경 1항1~6 신설

2~3항 변경 4항 신설 (이사회 회의록)

부 칙 (2013. 12. 09. 금천구청장 승인)

-- 제16조 임원취임 승인 (별표2 임원명단 변경)

이 정관은 2013. 12. 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6. 금천구청장 승인)

-- 제16조 임원취임 승인 (별표2 임원명단 변경)

이 정관은 2014. 1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5. 16. 금천구청장 승인)

-- 제16조 임원취임 승인 (별표2 임원명단 변경)

이 정관은 2016. 05.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1. 02. 금천구청장 승인)

-- 제16조 임원취임 승인 (별표2 임원명단 변경)

이 정관은 2018. 01.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4. 06. 금천구청장 승인)

-- 제16조 임원취임 승인 (별표2 임원명단 변경)

이 정관은 2018. 04. 0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6. 15. 서울특별시시장 승인)

-- 제4조 (사업의 종류) 변경

이 정관은 2018. 06.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9. 12. 금천구청장 승인)

-- 제2장 제5조 1항 변경 (자산구분)

-- 제2장 제7조 변경 (경비와유지방법)

-- 제2장 제8조 변경 (회계의 구분 등)

-- 제3장 제15조 변경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3장 제16조 1항 3항 변경 5항신설 (임원의 선임)

-- 제3장 제17조 신설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

-- 제3장 제18조 변경 (임원선임의제한 종전

제17조에서 18조로 이동)

-- 제3장 제19조 2항 삭제 변경 (임원의 임기 종전

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 제3장 제20조 변경 (이사장 및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임원의 직무 종전 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 제3장 제21조 변경(대표권의 제한 종전 20조에서
21조로 이동)

-- 제3장 제22조 변경(임원의대우종전 21조에서

22조로 이동)

- 제3장 제21조 변경(임원의 겸직금지 종전 22조에서 23조로 이동)
- 제4장 제24조 변경(이사회 구성 종전 23조에서 24조로 이동)
- 제4장 제25조 변경(의결사항 종전 24조에서 25조로 이동)
- 제4장 제26조 5항 변경 (이사회소집 및 특례 종전 25조에서 26조로 이동)
- 제4장 제27조 변경(이사회개회 및 의결종족수 종전 26조에서 27조로 이동)
- 제4장 제28조 변경(이사회결 제척사유 종전 27조에서 28조로 이동)
- 제4장 제29조 변경(이사회 회의록 종전 28조에서 29조로 이동)
- 제5장 제30조 변경(후원회 종전 29조에서30조로이동)
- 제6장 수익사업 삭제
- 제6장 제31조 변경(종전 제7장 법인사무국 및 운영 제6장으로 이동 종전 제32조 법인사무국 제31조로 이동)

- 제7장 제32조 변경(종전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7장으로 이동 종전 33조 정관변경 제32조로이동)
- 제7장 제33조 변경(종전 제34조 해산및합병제 33조로 이동)
- 제7장 제34조 변경(종전 제35조 잔여재산 의 귀속 제34조로 이동)
- 제8장 변경 (종전 제9장 공고방법 제8장으로 이동)
- 제8장 35조 변경(종전 제36조 공고의방법 제 35조로 이동)
- 제9장 변경(종전 제10장 보칙 제9장으로 이동)
- 제9장 36조변경 (종전제37조 준용규정 제36조로 이동)
- 제9장 37조변경 (종전제38조 운영규정 제37조로 이동)
- (별표1) 기본재산목록 변경

이 정관은 2018. 09.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3. 금천구청장 승인)

-- 제16조 임원취임 승인 (별표2 임원명단 변경)

이 정관은 2018. 10.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27. 서울시청장 승인)

--- 제4조 (사업의 종류) 1,4,7,8. (관련법령 수정)

--- 제4조 (사업의종류) 9 (삭제)

---- 제16조 ②항 삭제

---- 제20조 ②③항 개정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
임원의직무)

이 정관은 2019. 05. 27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목록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단위:원)

구분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원)	출연자
토지	금천구 시흥동 224-1	4,524	12,187,656,000	혜명복지원
	금천구 시흥동 224-10	54	44,992,800	"
	금천구 시흥동 224-11	76	63,323,200	"
	금천구 시흥동 224-3	100	104,700,000	"
	금천구 시흥동 241-7	6,172	15,281,872,000	"
건물	금천구 시흥동 224-1	1,344.14	413,470,804	"
	금천구 시흥동 224-1	999.72	323,348,000	"
	금천구 시흥동 224-1	1,160.53	429,948,000	"
	금천구 시흥동 224-1	499.93	230,967,660	"
	금천구 시흥동 241-7 제2동	1,684	1,012,563,752	"
	금천구 시흥동 241-7 제3동	1,474	258,099,630	"
	금천구 시흥동 241-7 제4동	1,377	929,351,016	"
계		19,466.32 (토지 10,926) (건물 8,539.32)	31,280,292,862	